

법원공보

2024. 12. 01

제 1701 호



법원행정처

목차

contents

<u>규칙</u>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821
<u>예규</u>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823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829
<u>신법령 목록</u>		1837

규칙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65호 2024. 11. 25.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p> <p>1. ~ 13. (생략)</p> <p>〈신설〉</p>	<p>제84조(공가) -----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p> <p>-----.</p> <p>1. ~ 13. (현행과 같음)</p> <p>제91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p>

예규

◎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09호 2024. 11. 14. 결재)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라. (1). (가).의 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일수란의 “1”을 “3”으로 한다.
4. 라. (1). (라).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4. 라. (1). (라). 1).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
-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4. 라. (1). (예시 3) 중 “당일(1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일)에”를 “당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3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3일)”로 하고, (예시 4) 중 “(2일)”을 “(3일)”로, “8일부터는”을 “13일부터는”으로 하며, (예시 5) 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배우자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한다.
4. 라. (5). (가). 중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4. 라. (5). (가).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하며,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라. (5). (가). 4.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 4. 라. (5). (가). 6. 중 “만 6세에 달한 날”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로,
“만 5세 이하”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다.
- 4. 라. (5). (라).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사용한 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2024. 7. 9.)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생략)	
출산	(생략)	
입양	(생략)	
사망	(생략)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나) ~ (라) (생략)

1) 다만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

〈신설〉

2)·3) (생략)

개정안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출산	(현행과 같음)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나) ~ (라) (현행과 같음)

1)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

-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가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2)·3) (현행과 같음)

현 행

(예시 1)·(예시 2) (생 략)

(예시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예시 4)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2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8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예시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2) ~ (4) (생 략)

(5)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1) ~ 3) (생 략)

4)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하 생략)

5) (생 략)

개 정 안

(예시 1)·(예시 2) (현행과 같음)

(예시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3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3일)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예시 4)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예시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2) ~ (4) (현행과 같음)

(5) 육아시간

(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36개월-----
----- 사용할 -----.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하며,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 ~ 3) (현행과 같음)

4) ----- 36개월-----
----- (이하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6) 자녀가 <u>만 6세에 달한 날</u>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u>만 5세 이하의 자녀</u>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7) (생략)</p> <p>(나)·(다) (생략)</p> <p>(라) <u>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u></p>	<p>6) ---- <u>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u>-----,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u>----- ----- -----.</p> <p>7) (현행과 같음)</p> <p>(나)·(다) (현행과 같음)</p> <p>〈삭제〉</p>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10호 2024. 11. 20.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72조제1호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⑧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 ⑨ 법 제7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또는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질병휴직위원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을 위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40조제3항에 따른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전문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 공무원으로 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계급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2의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예시(제19조제2항 관련)

- (예시) ① 임용 전 9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군인, 경찰 등)공무원 경력이 8년 있는 사람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9급에서 8급으로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방법
(※ 9급 → 8급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 1년**

- [4년(전 경력 8년의 1/2) 중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의 1/2인 1년의 범위에서 인정]

- **추가 산입기간(잔여기간의 2/3) : 2년**

- 잔여기간 3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 1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 3년]의 2/3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근무기간 : 3년(= 1년 + 2년)**

-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어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충족하게 됨(※ 9급~6급 :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고 4년 이상 근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원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요양승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원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p>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p>	<p>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72조제1호 단서의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질</p>

현행	개정안
<p>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7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원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원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병휴직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p> <p>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상 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⑤ 공무원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원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원요양·재요양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p> <p>⑥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p> <p>⑦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여야 한다.

⑧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⑨ 법 제7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또는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의2(질병휴직위원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을 위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40조제3항에 따른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전문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현행	개정안
	<p><u>지명한다.</u></p> <p>④ <u>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 공무원으로 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계급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u></p>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신법령 목록

(2024. 11. 1.~2024. 11. 15.)

조약

조약제25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20874	2024. 11. 15	4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497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66	2024. 11. 05	3
대통령령제3498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498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498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4983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11
대통령령제349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498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4986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19
대통령령제3498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69	2024. 11. 08	4
대통령령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871	2024. 11. 12	4

대통령령제34989호	중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	"	12
대통령령제3499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499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499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499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499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4995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499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499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34998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499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50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5001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3500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50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총리령

총리령제1991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74	2024. 11. 15	18
총리령제1992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총리령	"	"	22

부령

보건복지부령제1069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864	2024. 11. 01	4
중소벤처기업부령제95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1
통일부령제13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해양수산부령제699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2
환경부령제11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
행정안전부령제522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865	2024. 11. 04	3
국토교통부령제139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66	2024. 11. 05	22
문화체육관광부령제569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외교부령제140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20867	2024. 11. 06	4
해양수산부령제700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68	2024. 11. 07	4
보건복지부령제1068호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 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	6
환경부령제112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교육부령제34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20869	2024. 11. 08	7
보건복지부령제1069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	"	9

국토교통부령제1402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70	2024. 11. 11	4
기획재정부령제108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국토교통부령제1400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871	2024. 11. 12	50
국토교통부령제1401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농림축산식품부령제687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농림축산식품부령제68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
농림축산식품부령제689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	"	56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1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2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1
보건복지부령제107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2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1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3
해양수산부령제70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해양수산부령제70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
환경부령제1129호	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	"	69
교육부령제34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72	2024. 11. 13	3
국토교통부령제140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140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해양수산부령제70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	"	23
환경부령제1130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	"	26
환경부령제1131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해양수산부령제704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교육부령제34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73	2024. 11. 14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행정안전부령제5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국토교통부령제1404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874	2024. 11. 15	24
기획재정부령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기획재정부령제108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기획재정부령제586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34



법원행정처

SUPREME COURT OF KOREA
2024. 12. 01. VOL. 1701

